

[별표 1] <개정 2010.5.20>

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(제18조제1항 관련)

진폐관리 구 분	판 정 기 준
제1종	흉부엑스선사진의 상(像)이 제1형(第1型)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
제2종	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2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
제3종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1.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인 자 2.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(大陰影)의 크기가 한쪽 폐야(肺野)의 3분의 1 미만인 자
제4종	1.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이상인 자 2.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·제2형·제3형 또는 제4형(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)으로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비고 :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제1형 : 양(兩) 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(圓影)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(小陰影)이 소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
2. 제2형 : 양 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다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
3. 제3형 : 양 폐야에 진폐에 의한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고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
4. 제4형 : 진폐에 의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